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삭제되는 등 신청요건을 완화하고,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·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600호, 2026. 4. 28. 개정, 10. 29. 시행)됨에 따라,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·변경·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범위 및 내용을 규정하고,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완화에 맞춰 정비하며,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강제징수 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, 제도 운영시 일부 미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 확대(안 제3조)

- 1)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‘경찰청’을 추가함

나.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등 확인을 위한 조사 범위 등(안 제17조의10, 별표2)

- 1) 조사의 범위에서 ‘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관한 사항’을 삭제하고, 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’을 추가함
- 2) 조사의 내용에서 ‘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또는 횟수’를 ‘양육비 채무 이행금액’으로 변경하고, ‘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구성’을 ‘신청인과 미성년 자녀의 동거 여부, 미동거 사유 등 실질적 양육에 관한 사항’으로 보완하여 규정하며, ‘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’을 삭제함
- 3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신설함(별표3)

다. 선지급 신청인의 금융정보 및 소득·재산요건 확인을 위한 조문 삭제
(안제17조의11, 제18조, 제19조제21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국세청”을 “국세청, 경찰청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10제1항제1호 중 “불이행”을 “이행금액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발생을”을 “발생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 해당 여부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채무 불이행”을 “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금액 및 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“신청인과 미성년 자녀의 동거 여부, 미동거 사유 등 실질적 양육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법 제21조의11제4항에서 “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금융·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, 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, 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교정”을 “법 제21조의11제5항에서 “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·출입국·병무·교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법 제21조의11제6항에서 “주민등록전산정보, 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, 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, 출입국·병무·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”란 별표 3에

다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. 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.

제17조의11을 삭제한다.

제18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9조제21호를 삭제한다.

제21조 중 “별표 3과”를 “별표 4와”로 한다.

별표 1 제4호가목 중 “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”를 “외국국적동포”로 한다.

별표 2 제1호가목 중 “가족관계증명서”를 “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표 제5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병무·보훈급여·교정”을 “병무·교정”으로 하며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표 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, 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.

다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양육비 선지급 부정수급액 강제징수를 위한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
자료(제17조의10제7항 관련)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
2. 국세·지방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
 - 가.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사업자등록(해당 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)에 관한 자료
 - 나.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종합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
 - 다.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·주택·건축물·선박·항공기·차량·어업권·양식업권·회원권의 시가표준액
3. 토지·건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
 - 가.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
 - 나.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대장
 - 다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지적전산자료
 - 라.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
 - 마.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대장
 - 바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
 - 사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정보에 관한 자료
 - 아.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,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
 - 자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한 자료
 - 차.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
 - 카. 「선박등기법」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
 - 타. 「선박법」에 따른 선박원부
 - 파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
 - 하. 「주택법」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

거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상
황 및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
너. 「항공안전법」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

4. 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
자료

가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월평
균보수 또는 월보수액에 관한 자료(다만,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7제4항에 따
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는 제외한다)

나.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·상실에 관한 자료 및 실업급여·
육아휴직급여·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자료(다만, 「고용보험법」 제
77조의7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는 제외
한다)

다. 「공무원연금법」,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, 「군인연금법」, 「군인 재해보상
법」,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, 「별정우체국법」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
여에 관한 자료

라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·재산자료 및 가입자의 가입자
격 종류·사업장 정보 등 가입자격 관련 자료

마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소득월액, 가입자, 자격정보,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
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

5. 출입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

가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
거소신고에 관한 자료

나.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·외국인의 출입국 자료

6. 병무·교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

가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복무 자료

나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,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
법률」,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설 입소자 및 퇴소자에 관한 자료

7. 그 밖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

가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
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, 제공 및 환수 등에 관한 자료
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정보

- 다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농지연금에 관한 자료
- 라.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자료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위원회의 위원 등)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”이란 법무부,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성평등가족부, 기획예산처, 금융위원회, <u>국세청</u>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	제3조(위원회의 위원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세청, 경찰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7조의10(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(이하 “선지급 신청인”이라 한다)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7조의10(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<u>불이행</u> 에 관한 사항	1. ----- ----- <u>이행금액</u> ----- -----
2. <u>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관한 사</u>	<u><삭 제></u>

항

3. (생략)
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한다.

1. 양육비 채무자, 양육비 채무 금액,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또는 횟수 등 양육비 채무에 관한 사항

2.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구성

3.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

4. (생략)

④·⑤ (생략)

⑥ 법 제21조의11제4항에서 “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, 금융·국세·지방세,

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---- 발생 및 법 제2조제5호
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 해당
여부를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.

1. ----- 채무
금액,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
금액 및 그 -----

2. 신청인과 미성년 자녀의 동거 여부, 미동거 사유 등 실질적 양육에 관한 사항

<삭 제>

4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⑥ 법 제21조의11제5항-----

----- 출입국·병무·교정

토지·건물, 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, 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”란 별표 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.

<신 설>

제17조의11(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) ①
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 12제2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

-----.

⑦ 법 제21조의11제6항에서 “주민등록전산정보, 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, 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, 출입국·병무·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”란 별표 3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. 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.

<삭 제>

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2제1항·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금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해당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명확히 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1조, 제12조제1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.
이 경우 “성평등가족부장관”은 각각 “이행관리원의 장”으로, “양육비 채무자”는 각각 “선지급 신청인 및 그 가구원, 선지급 대상자”로 본다.

제18조(업무의 위탁) ① ~ ③ (생략)

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

제18조(업무의 위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.

1.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에 관한 업무

2. 법 제21조의11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받는 업무

3. 법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그 요청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는 업무

⑤·⑥ (생략)

제19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성
평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
의 장(제18조에 따라 해당 업무
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
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
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
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

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 리할 수 있다. 1. ~ 20. (생 략) <u>21.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선지 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무</u> 22. · 23. (생 략) 제21조(과태료 부과기준) 법 제28 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<u>별표 3과</u> 같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20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22. · 23. (현행과 같음) 제21조(과태료 부과기준) ----- ----- <u>별표 4와</u> --.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343